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편집 : 문화공보관 심계섭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소
 전화 75-6090

제 753 호
 1980. 2.18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406 호 :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3
◎ 규 칙		
제 1843 호 :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	3
제 1844 호 :	서울특별시시정연구단선치운영규칙	4
제 1845 호 :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원규칙개정규칙	5
◎ 고 시		
제 50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 지정자지정	10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52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12
제 53 호 :	도시계획시설 (미관지구) 지적승인	14
제 54 호 :	사방지정고시	15
제 55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	16
제 5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7
제 5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21
제 59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22
제 6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인가	22
제 6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28
제 63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변경허가	29
제 6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일부변경	30
제 6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정정지적승인	32
제 66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	33

◎ 공 고

제 37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공고	33
제 42 호 :	반도체정기구정비지구건축계획변경공람공고	34
제 43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34
제 44 호 :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소행정처분	35
제 13 호 (동대문구공고) :	공인신조개각공고	35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0.2.1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장갑(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406 호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중 제 1 항 제 2 항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학군은 후기(주간) 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와 같이 9 개의 학군을 둔다.

②학군별 고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학군 소속지역내에 소재하는 학교로 한다.

④령 제 112 조의 6 제 1 항 단서해당자는 그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 또는 인근 학군에 속한다.

제 3 조중 제 1 항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 및 제 3 항을 삭제한다.

①일정후기(주간) 학교에의 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통학상 편의를 고려하여 당해 학교 배정을 배제할 수 있다.

④통학상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군별 후기(주간) 학교수용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근학군의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1980.2.18)

이 조례는 198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위원회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80.2.18

◎ 서울특별시규칙 1843 호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길음택지 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2 항중 “예산과장”을 “예산1 담당관”으로 하고 “주택개발과장”을 “재개발2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단설치운영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㉑

1980.2.19

◎ 서울특별시규칙제 1844 호

서울특별시시정연구단설치 운영규칙

제 1 조 (설치) 시정에 관한 주요시책의 연구기획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단을 설치운영한다

제 2 조 (구성) ①시정연구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전문직원 규정에 의한 전임직원을 둔다.

②전임직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비전임직원을 임명 활용할 수 있다.

③시정연구단의 기능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분야를 수시 지정하여 연구반을 편성 또는 개편한다.

제 3 조 (기능및 자율적운영) ①시정연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장에게 직접보고 건의할 수 있다.

1. 장기정책방향, 증기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보고

2. 외부용역및 내부연구를 위한 과제선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보고

제 4 조 (지원) ①관계부서의 장은 시정연구단의 조사연구 활용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제 1 항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총괄 조정하고 각국장은 소관분야에 대한 시정연구단의 연구조사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

③시정연구담당관은 시정연구단의 사무등 간사역활을 담당한다.

제 5 조 (복무등) 시정연구원의 복무에 관한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원규칙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㉒

1980.2.20

◎서울특별시규칙제 1845 호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원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지방전문직원관리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전문직원규정 (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 14 조의 규정에 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채용계약서서식등) ①지방전문직원 (이하 " 전문직원 " 이라 한다) 채용계약서 (이하 " 계약서 " 라 한다) 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을 추가할수 있다.

②영 제 13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직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때는 계약서의 " 비전임직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 " 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3 조 (채용협의) ①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영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 채용 예정자조서 (별지 제 2 호 서식) 1 부
- 2 . 전문직원 채용계약서 1 부
- 3 . 예산현황
- 4 . 당해기관의 정원표
- 5 . 기타자격 및 채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등) 각 1 부

②전문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임용하기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기획관리관에게 제출, 그 자격에 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 이력서 1 부
- 2 . 자격및 경력증명서 1 부

제 4 조 (채용구비서류) ①전문직원의 채용구비서류는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에 의한 공무원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수 있다.

제 5 조 (3 급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자의 채용분야) 영 제 14 조중 3 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채용분야는 별표 1 과 같다.

제 6 조 (보수액결정) 보수액의 결정은

영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난이도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내용과 상응한 보수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발급은 “공무원증규칙”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요령”에 따라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제 7 조 (지방전문직원중) 전문직원중의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3급이상공무원근무경력자의채용분야

기술직렬 (18 개)	기계, 전기, 섬유, 화공, 조선, 금속, 채광, 수의, 의무, 약무, 보건, 선박, 토목, 건축, 측지,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연구직렬 (5 개)	학예연구, 공업연구, 광업연구, 농업연구, 보건연구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1급 내지 5급 직급표중 해당직렬임.

(별지 제 1 호서식)

지방전문직원채용계약서

지방전문직원규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전문 직원의 채용기관의 장을 “갑”이라 하고 채용 예정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당사자)

(갑)

(을) 본 적: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제 2 조 (지방전문직원의 담당업무)

제 3 조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 4 조 (주당 근무시간)

제 5 조 (권보수 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제 6 조 (신분)

가. 직군 및 등급 :

나. 전임 또는 비전임 구분 :

제 7 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영 제 8 조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

제 8 조 (복무) “을”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의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중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 내지 제 56 조와 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 제 2 장 및 제 3 장 제 21 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

제 9 조 (권리대습제) “을”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 .

제 10 조 (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

제 11 조 (기타계약조건)

가. “을”은 전문직원규정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나.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다. “을”은 법령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2 조 (비전임 직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

년 월 일

갑 :

을 :

주 소 :

성 명 :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지정자치정

- 1. 건설부고시 제 398 호 (79.11.7)
로 아파트지구로 지적 승인된 강동
구명일동 309-1 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
령 제 24 조, 제 45 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
였기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
택행정과) 및 강동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의 열람에 공한다.

1980.2

서울특별시 장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내역

가. 사업시행자: 남영건설(주)

대표이사 남 덕 현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강동구명일동 309-1 번지와 42 필지

다. 사업개요

○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

○ 사업규모: 아파트건립

(12층18동3,126세대)

○ 사업시행면적: 136,213 ㎡

(41,204 평)

○ 사업비: 56,268,000 천원

○ 사업기간: 80.1. .-82.12.31

라. 관계도면의 열람기간

1980.2.15-80.2.22 (7일간)

마.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강동구청 (시민봉사실장)

사업시행지정자신청토지조사

(영일동남영아파트)

순위	지 명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시용승락	비고
				주 소	성 명		
1	영일동	산 10	3,028	경기양주진전면배양리 277	정 현 수	승 락	
2	"	산12-5	1,377	안양시안양동 1501-1	황 사 천	"	
3	"	산13-2	8,029	중로구명분동4가 1921-14	이 근 웅	"	
4	"	산24-1	11,247	안양시안양동 901-1	단 사 천	"	
5	"	산25-7	4,476	성동구행당동 136	김 규 복	"	
				성동구사근동 146-56	김 명 길	"	
				중구신당동 80-4	김 순 자	"	

순위	지 명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사용승락
				주 소	성 명	
				충남공주군공주읍교동 175	김정자	승락
				성동구사근동 146-56	김징애	"
				"	김영애	"
6	명일동	산 23-1	6,248	강남구천호동사 23-38	윤용회	"
7	"	산 14	12,298	마포구서교동 381-301	김왕원	"
8	"	산 15-1	13,091	안양시안양동 501-1	단사천	"
9	"	산 16	9,322	서대문구평창동 131-21	유재덕	"
10	"	산 22	8,727	안양시안양동 531-1	단사천	"
11	"	300-1	2,229	성북구장위동 230-110	서원영	"
12	"	301-2	149	안양시안양동 501-1	단사천	"
13	"	301-3	36	"	"	"
14	"	309-1	24,850	동대문구전농동 90-3	학교법인 해병학원	"
15	"	313-2	2,612	안양시안양동 501-1	단사천	"
16	"	313-3	2,493	"	"	"
17	"	313-4	813	"	김춘순	"
18	"	314	615	"	"	"
19	"	315-3	1,058	"	"	"
20	"	315-1	2,493	"	단사천	"
21	"	315-5	1,815	"	"	"
22	"	315-4	1,805	강동구천호동 423-38	윤용회	"
23	"	12-16	595	"	"	"
24	"	12-17	1,299	"	"	"
25	"	21	466	안양시안양동 501-1	단사천	"
26	"	22	529	"	"	"
27	"	23	797	"	"	"
28	"	293-9	367	강동구명일동산 15-2	한 훈	"
29	"	293-6	1,131	"	"	"
30	"	293-8	109	"	"	"
31	"	293-3	754	"	"	"

순위	지명	지번	지적	주소자		사용승락
				주소	성명	
32	명일동	294	3,326	광주군 동부면창양리 240	윤정섭	승락
				성동구 행당동 315-80	윤완상	
				광주군 동부면창양리 410	윤용호	
				성동구 신당동 80-18	윤주호	
				성북구 정릉동 산 72-1	윤영철	
				광주군 동부면창양리 239	윤진호	
				" 318	윤동호	
" 242	윤영창					
" 산 3-2	윤덕호					
33	명일동	295-2	846	강동구 명일동 12	김성진	승락
34	"	295-3	1,663	"	"	"
35	"	294-1	1,904	"	서울시	
36	"	296-7	19	강동구 천호동 296-4	학교법인 천호학원	
37	"	296-6	123	"	"	
38	"	296-4	2,238	"	"	
39	"	296-5	10	"	"	
40	"	296-2	83	"	"	
41	"	296-3	269	"	"	
42	"	296-8	461	"	"	
43	"	296-1	413	"	"	
계	43 필지		136,213㎡ (41,204평)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2 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1. 건설부 고시 제 131 호 (76.8.21)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 호 (76.10.2) 로 아파트지구 지적승인된 강남구청담동영 동아아파트지구 (제 4-1 주구일부) 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 조 제 45 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및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

1980.2.

서울특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지정내역 가. 사업시행자 : ㈜한양주택 배종열 나. 사업시행구역의위치 : 강남구 청담동 (영동아파트지구제 4-1 지구 일부) 18번지의 31필지 (별첨토지조서및도면) 다. 지정면적 : 9,531.9 평 라.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 아파트 12층 3동 717세대 주구센타 1층 1동 ○ 사업비 : 15,210,450 천원 ○ 사업기간 : 80.2. .~82.12.31 ○ 관계도서열람기간 80.2.15~80.2.22 (7 일간)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	--

토 지 목 록

동 명	자 번	구획번호	면적 (평)	소 유 자	비 고	
청담동	51		5,634.7	㈜한양주택		
"	52-1					
"	-2					
"	-3					
"	-4					
"	53-5					
"	-6					
"	-7					
"	-8					
"	54	148				
"	55					
"	53-1					
"	-2					
"	-9					
"	-10					
"	18					
"	45-1					
"	20					
"	21					
"	42-1					

종 명	지 번	구획번호	면적 (평)	소 유 자	비 고
청담동	42-2				
"	43-1				
"	40-2				
"	41-2				
"	48-1				
"	63				
체비지	148-1	148	2,616.3		
"	148-3	148	60.6	취한 양 주 택	
"	148-8	148	582	"	
"	148-5	148	95.5	서 울 시	공공용지
"	148-4	148	100.4	"	"
"	148-10	148	442.4	"	"
총 계			9,531.9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3 호

도시계획시설 (미판지구)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 호 (80.1.19) 로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

10)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0.2.15.

서울특별시 장

도시계획시설 (미판지구) 지적승인조서

구 분	종 번	연 장	면 적	위 치	비 고
기 정	4-30	1,870m	20,880㎡	문배동-마포동 (옥천북개도로)	12 m
변 경	"	"	24,060㎡	문배동-옥천구간 530 위치조정	15 m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54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사방지정고시</p> <p>사방사업법 제 3 조 동법시행령</p>	<p>제 1 조 및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2.15</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장</p>
---	---

사 방 지 지 정 명 세 서

소재지	지 번	지정 면적	소 유 자 또 는 점 유 자				
			시 군	읍 면	동 리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성북구 돈암동	산 11-293	㎡ 16,212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173-1		학교법인성신학원 이사장 이 숙 중
	산 11-209	㎡ 2,281	"	"	"		"

사 방 지 지 정 조 서

조사자성명

(인)

토지의소재지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산 11-209 번지의외 1 필				
조사년월일	1980.2				
사업계획승인년월	1977.8	승인번호			
사방지지정면적	18,493 ㎡ (5,604 평)				
토소유지자	주소	성북구돈암동 173-1 번지			
	주민등록번호		성명	학교법인성신학원 이사장 이 숙 중	
사방지의지정 이유	사방사업 및 조립지역으로 사방사업법 제 3 조 및 동법시행령제 1 조 동제 20 조에 의하여 사방지로 지정.				
비 고					

◎ 서울특별시고시제 55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
지조성사업)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 호 (80.1.22) 및 동고시 제 24 호 (80.1.26)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마포구성 산동산 11-47 번지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시민봉사실 도시정비과 및 한양학원에 각각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0.2.16

서울특별시장

사업개요

1. 사업시행지 : 서울시마포구성 산동산 11-47 번지의 3 필지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3. 사업의규모 : 총면적 11,500 (약 3,478 평)
4.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시성동구

행당동 17 번지

학교법인 한양학원이사장 백경순

5. 사업기간 : 80.2.16-80.6.30.
6. 사용할토지 : 별첨 (생략)
7. 위치및계획평면도 : 별첨 (생략)
8. 공사설계도면 : 별첨 (생략)

허가증

1. 사업시행지 : 서울시 마포구창전동 산 11-47 번지의 3 필지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3. 사업규모 : 총면적 11,500 (약 3,478 평)
4.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시성동구행당동 17 번지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백경순
5. 사업허가번호 : 서울특별시고시제 55 호
6. 사업기간 : 80.2.16-80.6.30
7. 사용할토지 : 별첨 (생략)
8. 토지소유자 : 토지수용법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별첨.
9. 위와같이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동법시행령 제 26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권한위임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별첨 허가조건 및 설계부서와 같이 허가함.

1980.2.16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 고시 제 198 호 (71.4.7) 로 시설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2 호 (75.11.24) 로 지적승인된 강남 1 로 (풍납동) 건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공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도로과 및 강동구청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18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72-3 의 10 필지
2. 사업시행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강남 1 로 (풍납동) 건설공사
3. 사업시행 규모 : B = 20 미터
L = 3,800 미터
임체시설 2 개소 (잔설 및 천호대교 남단) 교량 1 개 (성내교 : B = 16 미터 , L = 150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79.10.26 - 8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8. 공사설계도서 : 벌침 (생략)
9. 위치 및 계획 평면도 : 벌침 (생략)

의 의 목록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천호동	472-3	대	99	천호동 472	김 용 철
2	"	472-5	대	137	"	"
3	풍납동	60-11	대	213	풍납동 52	박 기 태
4	"	60-15	대	2	아포, 하수동 13	조 영 방
5	"	60-9	대	77	풍납동 52	박 기 태
6	"	59-6	대	59	종로, 공평동 4	이 성 경
7	"	59-4	대	135	"	"
8	"	58-3	대	47	풍납동 58-3	정 재 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9	풍납동	58-7	전	21	천호동 472-3	김용철
10	"	58-11	전	111	" " "	"
11	"	58-4	대	48	" 58-4	"
12	"	57-1	대	273	상도1동 417-3	윤경열
13	"	57-4	대	110	"	"
14	"	57-35	대	90	풍납동 66-28	최수길
15	"	57-25	대	25	성내동 318	이춘명
16	"	57-36	대	20	풍납동 66-28	최수길
17	"	57-19	대	71	군자동 88-27	최운천
18	"	57-27	대	17	성동구군자동 88-27	"
19	"	57-9	대	82	" "	"
20	"	57-29	대	80	57-29	김상두
21	"	57-30	대	17	"	"
22	"	57-60	대	166	상도1동 417-3	윤경열
23	"	57-24	대	20	중구조동 53-19	"
24	"	56-4	전	30	" 쌍림동 257-2	김필한외1
25	"	56-8	전	59	" " "	"
26	"	57-61	대	350	" 초동 53-19	윤경열
27	"	57-31	대	98	풍납동 57-31	이만성
28	"	57-17	대	18	" 57-17	안재숙
29	"	104-1	전	62	경기양주장촌부곡리 46-1	한동호
30	"	104-8	대	1,063	경기양주장촌 " "	"
31	"	99-59	대	14	풍납동 99-11	임수복
32	"	99-58	대	20	" 99-10	정인영
33	"	99-57	대	30	" 99-9	최옥분의41
34	"	99-60	대	5	" 65	권태갑
35	"	99-9	대	42	" 99-9	최옥분
36	"	99-10	대	40	" 99-10	정인채
37	"	99-11	대	32	" 99-11	임수복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39	풍납동	99-62	대	36	풍납동 99-9	최옥분의 4인
40	"	99-16	"	30	" 99-10	정인채
41	"	103-5	"	132	" 103-5	김소부
42	"	103-35	"	47	" 103-6	김종갑
43	"	103-9	"	77	전농동 50	오송택
44	"	103-37	"	30	잠실 4 동장미 APT2동 1007	장두석
45	"	72-24	"	13	인현동 271-154	오윤균
46	"	72-23	"	115	"	"
47	"	72-22	"	176	관훈동 184	이종인
48	"	98-21	"	223	"	"
49	"	98-20	"	359	풍납동 129	이영순
50	"	103-6	"	36	풍납동 103-6	김종갑
51	"	98-10	"	60	" 129	이영순
52	"	98-13	전	95	" "	"
53	"	98-14	대	51	" "	"
54	"	98-18	"	5	" "	"
55	"	107-2	전	62	" 96	손치영
56	"	108-1	"	153	부곡리 641-1	한동호
57	"	121-1	"	474	풍납동 186	이모숙
58	"	121-2	"	286	창신동 669-2	오옥련
59	"	120-1	임야	1,767	인천송악동 2 가 12	채수산
60	"	120-4	"	1,073	"	"
61	"	121-7	전	1,038	풍납동 97	손치공
62	"	121-27	"	2	창신동 660-2	오옥현
63	"	121-14	"	112	풍납동 97	손치공
64	"	121-29	"	245	천호동 410-160	김영복
65	"	121-8	"	76	창로창신동 67-1	박태범
66	"	121-18	"	197	금호 4 가 1173	김영희
67	"	121-9	"	91	"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68	풍납동	121-5	전	102	종로창신동 669-2	오옥련
69	"	121-20	"	230	" "	"
70	"	120-2	"	2,360	구의동 93-1	권태갑
71	"	121-13	"	3	천호동 454-17	황명근
72	"	121-32	"	81	"	황명환
73	"	120-8	"	27	"	"
74	"	74-2	하천	122	미 등 기	
75	"	114-7	"	1,051	풍납동 97	이강암
76	"	118-3	전	165	둔촌동 75	조봉우
77	"	119-1	"	446	동작동반포 APT57 통 305호	
78	"	119-2	"	287	둔촌동 26-2	최정산
79	"	117-44	"	106	성내동 21	원장학
80	"	117-1	"	617	풍납동 97	김용선
81	"	117-2	대	33	천호동 397-147	서학순
82	"	180-6	전	10	화양동 51	홍점복
83	"	181-2	"	119	풍납동 181-21	김창운
84	"	181-3	"	102	" 186	손치윤
85	"	181-1	대	89	천호동 397-147	선학순
86	"	180-1	전	510	화양동 51	홍점복
87	"	182-1	"	7	성 동 "	"
88	"	183-1	"	522	경운동 58	안효근
89	"	183-3	"	274	"	"
90	"	184-1	"	55	행당동 9	이봉호
91	"	184-9	"	317	경운동 58	안효근
92	"	184-1	"	150	풍납동 87	손치석
93	"	184-12	"	43	"	"
94	"	184-3	"	21	행당동 9	이봉호
95	"	184-6	"	136	암사동 528	박춘식
96	"	195-13	잡	846	진관외동 175-38	김병학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수 소	성 명
97	풍납동	195-14	잡	242	진관외동 175-38	김 병 학
98	"	193-3	전	1,994	천호동 454-7	황명환
99	"	204-1	"	565	경운동 1-8	안효근
100	"	214-1	"	406	자양동 22-38	박봉수
101	"	214-2	"	354	풍납동 97	박봉수
102	"	213-3	"	456	경운동 1-8	안효상
103	"	213-2	"	60	"	"
104	"	212-3	"	504	풍납동 212	김기수
105	"	300-1	"	150	후암동 55-11	"
106	"	300-5	잡	957	충신동 67-9	이영순
107	"	300	하천	922		
108	"	301-1	잡	340	진관외동 175-385	김 병 학
109	"	301-4	"	880	천호동 402	박순여
110	"	302	전	242	쌍문동 533-6	임오정
111	"	98-5	"	817	풍납동 129	이영순

◎ 서울특별시고시제 58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41 호 (77.9.26) 및 동고시 제 365 호 (77.10.19) 로 학교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제 463 호 (79.12.10)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18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시장서구신정동 경인지구 10-1 구획의 2 (신정동 56-3 의 33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양목국민학교
3. 면적 및 규모 : 4,572.9 명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시교육위원회
회 교육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80.

나. 준공예정일 : 착수년월일로 부터
1년

6.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
생략)

7.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59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655 호 (78. 12.14) 및 동고시제 182 호 (79.5. 4)로 학교시설 결정 및 지적승 인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 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권 한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18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시 강서구 목동 경인 2 차지구 162-2 가구의회의 7

(목동산 59 의 9 필)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 교) 정목국민학교

3. 년적및규모 : 4,347 평

4.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시 영 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80.

나. 준공예정일 : 착수년월일로부터 1년

6.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 생략)

7.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60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인가

1. 서울특별시 공고제 33 호 (80.2.4) 로 공담공고 인하고 도시계획법제 25 조 및 동법제 26 조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 의 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며 미 수령자에게는 공시 송달할 것임.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 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

서울특별시장

<p>1) 사업명 : 이화로-동승아파트간 도로매설공사</p> <p>2) 사업시행기의 위치 : 종로구충신동 53-16-이화동 9-313 앞</p> <p>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p> <p>4) 사업의시행기간 : 80.2. -80.12.31</p> <p>5) 사업의 규모 L = 8 미터-12 미터 L = 506 미터 (12미터구간 180 미터 8 " 326 미터)</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표시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다음</p> <p style="text-align: center;">인 가 증</p> <p>1. 사업시행의 위치 : 종로구 충신동 53 의 13 -이화동 9 의 313 앞</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화로-동승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p> <p>3. 사업의 규모 B = 8 미터-12 미터</p>	<p>L = 506 미터 (12미터구간 180미터) 8미터구간 326미터)</p> <p>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p> <p>5. 사업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0 호</p> <p>6. 사업의 기간 : 1980.2 - 1980.12.31</p> <p>위와 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26 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p> <p style="text-align: right;">1980.2. 서울특별시</p> <p>인가조건</p> <p>1)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2) 별첨 개략설계 도서에 의하여 시공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	--

토 지 조 서

순번	소재지		지목	평수	소유자	
	동	지번			주소	성명
1	충신동	53-25	대	23.0 평	충신동 53-1	정명채
2	"	53-2	"	82.6 "	" 53-2	박순자
3	"	53-26	"	21.6 "	" 53-3	주세진
4	"	53-27	도로	36.8 "	성동구구의동222-38	성현남
5	"	51-1	대	42.3 "	충신동 51	이영순
6	"	50-3	"	65.8 "	" 50	유영순

순번	소재지		지목	평수	소유자	
	동	지번			주소	성명
7	충신동	49-1	대	44.2 ㎡	충신동 49	홍철희
8	"	5-88	"	23.1 "	" 5-88	남숙희
9	"	5-91	"	89.9 "	" 5-37	석양순
10	"	5-92	"	5.5 "	" 5-38	이돈순
11	"	5-90	"	58.1 "	" 5-11	이임성
12	"	5-34	"	26.4 "	" 1-28	김홍기
13	"	5-87	"	26.4 "	" 5-87	안이진
14	"	5-89	"	12.3 "	" 5-1	박정삼
15	"	4-1	"	58.2 "	" 4	이종운
16	"	3-1	"	59.4 "	" 3	심향섭
17	"	2-1	"	56.5 "	" 2	박길원
18	이화동	14-1	"	5.9 "	이화동 14	이보현
19	"	13-1	"	52.9 "	" 13-1	김명순
20	"	12-6	"	4.8 "	" 12-2	김용래외4인
21	"	12-5	"	24.2 "	" 12-3	박한영
22	"	12-4	"	53.9 "	" 12-1	김옥실
23	"	11-7	"	10.0 "	" 11	김학봉
24	"	11-6	"	30.3 "	" 11-2	김수봉
25	"	11-5	"	7.8 "	" 11-4	이필숙
26	"	11-1	"	27.4 "	" 11-1	심준식
27	"	10-41	"	55.8 "	" 10-5	정을용
28	"	10-48	"	58.9 "	" 10-5	김진준
29	"	10-47	"	53.8 "	" 10-9	전영민외1인
30	"	10-59	"	14.6 "	"	"
31	"	10-46	"	54.3 "	" 10-2	김기화
32	"	10-58	"	30.9 "	"	"
33	"	10-13	"	30.4 "	" 10-13	민영돈
34	"	10-14	"	56.2 "	"	"
35	"	10-24	"	52.6 "	" 10-24	이임성

순번	소 채 지		지 목	평 수	소 유 자	
	동	지 번			주 소	등 급
36	이화동	10-56	대	16.9 m ²	이화동 10-12	이 후 종
37	"	10-3	"	43.3 "	" 10-3	정 윤 영
38	"	10-38	"	2.0 "	"	"
39	"	10-3	"	38.3 "	" 10-3	이 봉 재
40	"	10-38	"	4.6 "	"	"
41	"	10-51	"	14.3 "	"	국
42	"	10-50	"	32.1 "	" 10-36	이 득 수
43	"	10-49	"	5.9 "	" 10-35	유 영 한
44	"	9-355	"	18.0 "	" 9-24	이 완 종
45	"	9-356	"	113.0 "	" 9-265	양 명 순
46	"	9-5	"	113.4 "	" 9-5	이 평 산
47	"	9-359	"	56.8 "	" 9-41	이 문 전
48	"	9-360	"	41.7 "	진농동 65-76	한복형외1인
49	"	9-362	"	32.5 "	"	국
50	"	9-361	"	0.3 "	이화동 9-29	이 윤 용
51	"	9-400	"	34.6 "	종로4가63-1	간 현 옥
52	"	9-401	"	23.5 "	"	"
53	"	9-402	"	51.0 "	"	"
54	"	9-398	"	21.9 "	이화동 9-32	김 석 영
55	"	9-399	"	11.1 "	"	"
56	"	9-386	"	96.2 "	" 9-245	박 순 금
57	"	25-18	"	3.0 "	성북동1가35-1	이 교 홍
58	"	9-405	"	2.4 "	"	"
59	"	9-404	"	1.7 "	"	"
60	"	9-403	"	4.1 "	"	"
61	"	9-397	"	16.3 "	"	"
62	"	9-396	"	48.2 "	"	"
63	"	9-394	"	8.3 "	"	"
64	"	9-393	"	9.3 "	"	"

순번	소재지		지목	평수	소유자	
	동	지번			주소	성명
65	이화동	9-392	대	16.7 m ²		국
66	"	9-391	도로	17.8 "		"
67	"	9-304	대	3.3 "		"
68	"	9-390	도로	9.5 "		"
69	"	9-389	"	16.8 "		"
70	"	9-199	대	19.2 "		"
71	"	9-200	"	13.9 "		"
72	"	9-196	"	28.4 "		"
73	"	9-388	"	5.0 "		"
74	"	9-154	"	29.8 "		"
75	"	9-379	"	21.7 "		"
76	"	9-380	"	21.3 "		"
77	"	9-381	"	8.9 "		"
78	"	9-382	"	89.1 "		"
79	"	9-153	"	27.4 "		"
80	"	9-384	"	7.6 "		"
81	"	9-385	"	5.4 "		"
82	"	9-387	"	10.8 "		"

건물조서

순번	소재지		구조	평수	소재지	
	동	지번			주소	성명
1	충신	53-2	목조와습	12.0 평	충신동 53-2	박순자
2	"	53-3	"	5.0 "	" 53-3	주세진
3	"	53-1	"	2.0 "	" 53-1	정명채
4	"	51	"	7.34	" 51	이영순
5	"	50	"	12.0 "	" 50	유영순
6	"	49	"	4.0 "	" 49	홍철희
7	"	5-38	"	1.5 "	" 5-38	이돈순

건 물 조 서

순번	소재지		구 조	평 수	소 유 자	
	동	지 번			주 소	성 명
8	충 신	5-37	목조와즙	17.0	충신동 5 - 37	석양순
9	"	5-88	"	3.0	" 5 - 88	남숙희
10	"	5-87	"	4.0	" 5 - 87	안이진
11	"	5-34	"	3.0	" 1 - 28	김흥기
12	"	5-11	"	8.5	" 5 - 11	이임성
13	"	4	"	7.94	" 4	이종운
14	"	2	"	5.0	" 2	박길원
15	이 화 동	13- 1	목조초즙	8.91	이 화 동 13 - 1	김명순
16	"	12- 2	목조함석즙	2.0	" 12 - 2	김용희외4인
17	"	11- 2	목조초즙	7.8	" 11 - 2	조한순
18	"	11- 1	"	4.29	" 11 - 1	심준식
19	"	10- 5	목조와즙	1) 9.5 2) 3.0 지하) 1.0	" 10 - 5	정울용
20	"	10- 9	목조와즙	8.0	" 10 - 9	전영민의1인
21	"	10-4	"	7.0	" 10 - 4	김기화
22	"	10-13 -14	목조세멘 와즙	2.3	" 10 - 13	민 영돈
23	"	10-24	"	4.5	" 10 - 24	이임성
24	"	10- 3 -38	연와조평 옥개	1) 7.4 2) 7.4 3) 7.4	" 10 - 3	이봉재
25	"	10- 3 -38	연와조평 옥개	1) 6.0 2) 6.0 지하) 4.16	" 10 - 3	정운영
26	"	10-36	세멘부력평 옥개	1) 6.0 2) 6.0 3) 6.0	" 10 - 36	이득수
27	"	9-42	목조와즙	3.0	전농동 66 - 76	한복형외1인
28	"	9-41	"	6.0	이 화 동 9 - 41	이문건

순번	소재지		구조	평수	소유자	
	동	지번			주소	성명
29	이화동	9-265	목조와즙	9.25	이화동 9-265	양명순
30	"	9-5	"	15.5	" 9-5	이명산
31	"	9-245	철근콘크리트평옥개	1) 10.32 2) 10.9	" 9-245	박순금
32	"	9-32	목조와즙	8.0	" 9-32	김석영
33	"	산1-2 제32호	세멘부력세멘와즙	1) 5.8	이화동산 9-32	안수경
34	"	산1-2 제17호	"	1) 2.3 2) 0.7	" 9-17	안자문
35	"	산1-2 제22호	"	1) 2.4 2) 0.6	" 9-22	김인화
36	"	산1-2 제21호	"	1) 3.4	" 9-21	황정순
37	"	산1-2 제19호	"	1) 9.9 2) 4.1	" 9-19	김창구
38	"	산1-2 제20호	"	1) 3.9	" 9-20	김승구
39	"	산1-2 제17호	"	1) 5.8	" 9-17	이대순
40	"	산1-2 제15호	"	1) 9.9 2) 4.1	" 9-15	김동열
41	"	산1-2 제13호	"	1) 9.9 2) 4.1	" 9-13	김삼순
42	"	산1-2 제11호	"	1) 9.9 2) 4.1	" 9-11	홍인숙
43	"	산1-2 제8호	"	1) 9.9 2) 4.1	" 9-8	백금혜

◎ 서울특별시고시제 61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0 호 (79. 12.13)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1980. 2. 19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 성북구 돈암동 184-127 외 18 필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한성여중고 학생실험실습실 신축부지조성사업

다. 사업의규모 및 면적 : 2,970㎡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 김의형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년월일 : 80. 2. .

2) 준공예정일 : 80. 5. 31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생략)

사. 공사설계도서 : 별첨 (생략)

※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 끝

◎ 서울특별시고시제 63 호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2 호 (78.9.11) 로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허가 및 동 고시 제 684 호 (78.1

12.26) 로 변경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의 사업기간 연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을 변경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0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양재동 산 73-3 외 10 필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 (주) 금성사 주차장 신설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282 번지

(주) 금성사 대표이사 허신구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 : 1979.2.5.

준공예정일 : 1979.6.30

변경준공예정일 : 1980.3.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생략)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제 64호

1980. 2.1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일부변경

가. 사업시행지 : 영등포구 고척동 산 58-5 의 18 필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 (77.2.18) 호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고척동 산 58-5 의 18 필지 상의 동양공업전문대학교 용지에 대하여 일부 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동양공업전문대학교

다. 사업시행면적 : 10,908 ㎡

라. 사업규모변경사항 : 별첨 설계도서와 같음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마.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영등포구 고척동 62-160 학교법인 동양학원 이사장 조승계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		초		변		경	
착	공	준공예정일		착	공	준공예정일	
1977. 2.24		1979. 8.31		1977. 2.24		1980. 4.25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	지	지	비	고
	번	목	적	고	고
영등포구고척동	산 58 - 1	임	600 평중 122		학교법인동양학원
	산 58 - 5	"	30		"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영등포구고척동	산 58-6	임	1,080평중 825.1	학교법인 동양학원
	산 59-1	"	930	"
	62-160	대	6,850평중 462	"
	52-167	"	30	"
	62-40	"	61	환지확정지
	62-41	"	55.1	"
	62-42	"	54.9	"
	62-43	"	57	"
	62-44	"	57.4	"
	62-45	"	51.4	"
	62-46	"	53	"
	62-47	"	53	"
	62-49	"	53.3	"
	62-50	"	61	"
	62-123		770.4평중 152	환지확정지, 시유지
	62-126	도로	387.9 " 95.6	" "
62-108	대	121평중 96	" "	
계		3,299.8평	(10,90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 주소, 성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성 명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비 고
영등포구 고척동	산 58-1	임	600평중 122	학교법인		
	산 58-5	"	30	동양학원		
	산 58-6	"	1,080평중 824.1	"		
	산 59-1	"	930	"		
	62-160	대	850평중 462	"		
	52-167	"	30	"		
	62-40	"	61	"		환지확정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성 명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비 고
영등포구 고척동	62-41	대	55.1	학교법인		환지 확정지
	62-42	"	54.9	동양학원		"
	62-43	"	57	"		"
	62-44	"	57.4	"		"
	62-45	"	51.4	"		"
	62-46	"	53	"		"
	62-47	"	53	"		"
	62-49	"	53.3	"		"
	62-50	"	61	"		"
	62-123		770.4평중152	서울특별시		"
	62-126	도로	387.9 # 95.6	"		"
	62-108	대	121평중96	"		"
계		3,299.8평			(10,908㎡)	

◎ 서울특별시고시제 6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정정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73 호(78.7.27)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동고시제 531 호(78.10.13)로 지적승인하였으나 도면에 오류가 있었기 도시계획법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79.12.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정정 지적 승인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2.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도로)정정 지적 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초로	2	8미터	120미터	산 89	산 115	장문고진입로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66 호</p> <p>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고시제 503 호 (79.12.5)로 시설 결정된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도시계획법제 13 조와 전실부</p>	<p>고시제 463 호 (79.12.10)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2.</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영등포구신길동 446	1,891	태진운수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공고제 37 호</p> <p>전기용품제조업허가위소공고</p> <p>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규정</p>	<p>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2.13</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소재지	허가일	제조구분	취소사유
성창기계공업 (주)	최영호	1-6-38	공장 : 관악구 봉천동 719-3 본사 : 용산구 동자동 43-37	73.11.	소형교류전동기류 제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 7 조 위반

◎ 서울특별시 공고제 42 호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건축계획변경 공람광고

구내 삼화분구 건축계획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다. 장 소 : 당시 건축국 재개발
1 과

1. 서울특별시 공고제 79 호 (78.3.9) 로 확정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삼화분구 건축계획에 대하여 건축법제 33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152 조 규정에 의거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니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중 공람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1980.2.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내용 : 반도특정가구 정비지

◎ 서울특별시 공고제 43 호

제목 : 전기용품제조업 허가취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 제 3 호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하고 동법제 26 조의 지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2.20

서울특별시장

다 음

업 체 명	대표자	소 제 지	허가번호	제 조 구 분	취 소 사 유
삼일조명	지경식	성수 2 가 310-8	1-10-13	광원용용기구	제 8 조 1 항 1 호 위반
"	"	"	1-12-15	휴대발전기 및 상기이외의교 류용 전기기 계 기구	"
서울전자산업사	소홍선	성수 1 가 13-194	1-7-9	전 열 기 구	제 8 조 1 항 5 호 위반
이운산업사	이무부	성수 2 가 299-134	1-7-56	"	"

◎ 공고제 44 호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소
행정처분

규칙제 72 조의 2 규정에 의거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소방법제 37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

1980.2
서울특별시 장

다
음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소재지	허가일자	제조품목	영업정지사유	영업정지 기간
(주) 한일 소방기구	최남근	내무부허가 제 63 호	강서구염창동 31-8	76.11.16	휴도능	소방법제 37 조 제 1 항및동법	80.2.21 ~ 3.21
삼성박엽 공업(주)	전용태	내무부허가 제 65 호	동대문중화동 110-15	74.9.16	방화액및 방화도료	시행규칙 제 72 조의 2	
대과방재 (주)	강훈성	내무부허가 제 57 호	동대문면북동 186-11	75.12.29	경보기구	규정 위반	
신농방 상사(주)	박상연	내무부허가 제 17 호	영등포도림동 222-1	78.11.23	방화액및 방화도료		

◎ 동대문구청 공고제 13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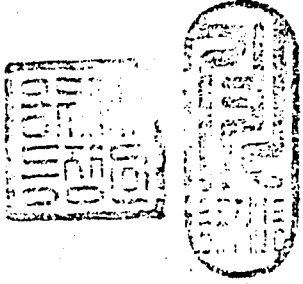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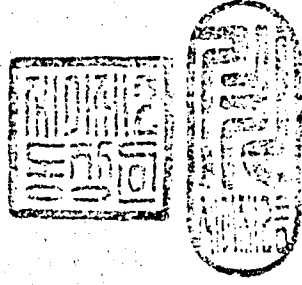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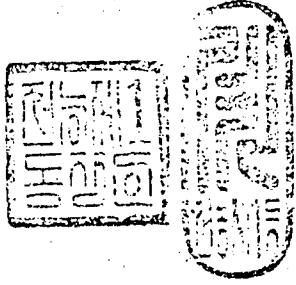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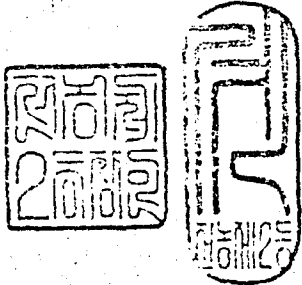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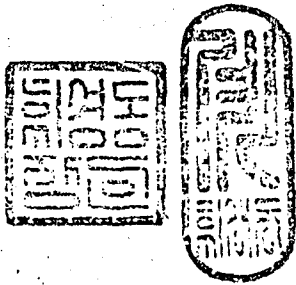
공인신조개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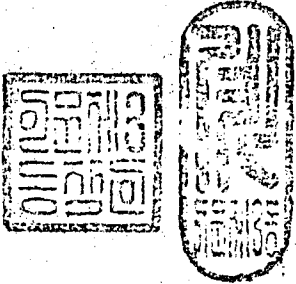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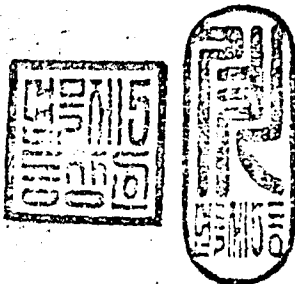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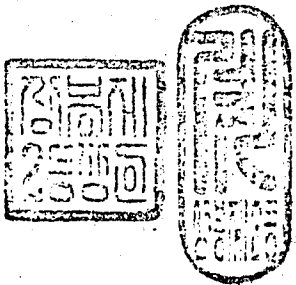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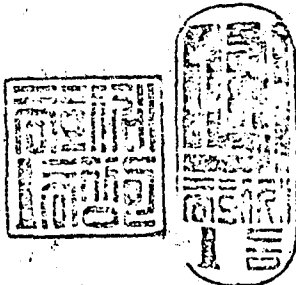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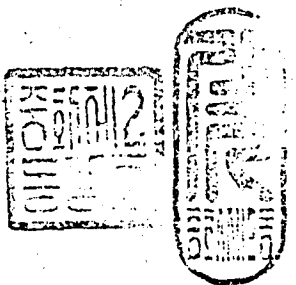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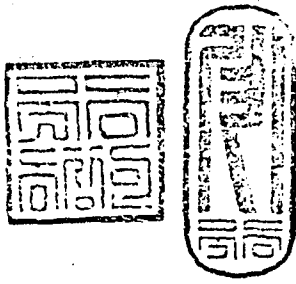
동·중화 2 동·남동·방우 2 동의 공인
신 개작 80.3.1 부터 사방을 승
인하였기 동 조례 9,10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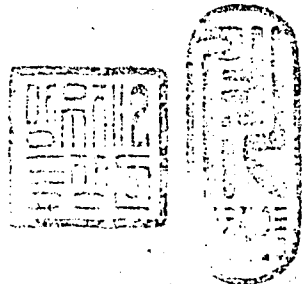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인조배 제 6 조의 규
정에 따라 당구 각부 1 동·제기 2 동
전중 1 동·전중 2 동·전중 4 동·취경동
이문 3 동·면목 5 동·상봉 2 동·중화 1

1980.2.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장

인 영		인 영	
공인명	용 두 1 동 장 인 및 계 인	공인명	제 기 2 동 장 인 및 계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진 농 1 동 장 인 및 계 인	공인명	진 농 2 동 장 인 및 계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진 동 4 동 장 인 및 계 인	공인명	휘 경 동 장 인 및 계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이문 3 동 장 인 및 계 인 .	공인명	면·부 5 동 장 인 및 계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상 봉 2 동 장 인 및 계 인	공인명	중 화 1 동 장 인 및 계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중 화 2 동 장 인 및 계 인	공인명	북 동 장 인 및 계 인

인 영		
공인명	방우 2 등 장인 및 계인	

--	--